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02518호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‘농식품이용권’으로 정의함(안 제3조 제8호의2 신설).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의 3 신설).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의4 신설).

II. 검토 의견

- 개정안은 안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의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, 기존 제23조의3(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)을 안 제23조의6으로 조문 이동을 하고 있음.

그런데,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(이하 “강원특별법”이라 함)」 제54조제3항¹⁾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3조의3을 인용하고 있는바, 개정안에 맞춰 「강원특별법」 제54조제3항의 인용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따라서, 부칙의 “다른 법률의 개정²⁾”을 통해 「강원특별법」 제54조 제3항을 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54조제3항 중 “제23조의3제3항에”를 “제23조의6제3항에”로 한다.</u>

- 1)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54조(접경지역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 군급식 공급지원 등)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- 2) “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은 법률의 제정·개정·폐지 등으로 인하여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 등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등의 경우에 그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을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 조항, 제명 등을 변경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.” [국회 법제실, 『법제기준과 실제』, P.908, 2024.5.]

- 그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